

USTR, 對外 貿易障壁 報告書

本會 國際部

1. 美國 貿易代表部(USTR) 소개

'88年에 통과, 입법화된 新 綜合貿易法에 따른 優先協商對象國 지정을 앞두고 韓國이 이번 대상국에 포함되어 협상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오던, 아니면 다행히 이번에는 제외되더라도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美國側의 계속된 압력에 직면하게 될 통상문제는 향후 양국간의 최대 협안의 하나로 부상될 전망이며 이것이 양국의 政治, 經濟, 社會 전반에 끼치게 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韓·美 통상협안이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外國의 불공정 관행과 輸入規制 障壁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對外 貿易協商의 주무기관인 美 貿易代表部의 개괄적 소개를 통하여 對美 통상에 관한 일반의 이해를 돋고자 한다.

가. 沿革

對外貿易 협상을 위한 특별사무소가 1962年 貿易擴大法에 따라 의회에서 입안되어 1963年 1月 15日 大統領令 11075으로 캐네디 大統領에 의해 設立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사무소는 美國을 대표하여 外國과의 모든 貿易協商을 수행하고 1930年 關稅法과 1962年 貿易擴大法에 따른 貿易協定 계획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1974年 貿易法의 일부로서 의회는 本사무소

를 大統領 직속의 각료급 수준의 기관으로 격상시켰으며, 貿易政策 조정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

1980年 이 사무소는 美國 貿易代表部(UST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로 개칭되었으며 1980年 1月 4日 카터 大統領의 명령에 의하여 USTR은 전반적 貿易政策을 입안,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USTR은 또한 國家 최고의 貿易協商 기관으로 지정되어 주요 國際貿易 관련기관 중 美國의 대표기구가 되었다. 大統領과 의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사급 각료 대표가 USTR을 이끌고 있다.

USTR의 역대 대표자는 아래와 같다.

1977~1979 Robert Strauss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1979~1981 Reuben Askew

1981~1985 William E. Brock III

1985~1989. 1 Clayton Yeutter

1989. 2~ Carla Hills

나. 機能

USTR은 다음의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國際貿易政策에 관한 大統領의 최고 자문기관
 - 美 정부내 國際貿易政策 개발과 이의 조정
 - 國際貿易協定을 위한 國家 최고 협상기관
- 貿易政策에 관한 大統領의 최고 자문역으로

서, USTR 대표는 각료의 일원이며 각료급으로 구성되는 經濟政策委員會(EPC : Economic Policy Committee)의 일원이기도 하다.

USTR은 貿易政策 실무위원회(TPSC : Trade Policy Staff Committee)와 本위원회의 44個 소위원회를 총괄함으로써 부처간 貿易政策을 관장한다. USTR은 또한 貿易政策 검토 그룹(TPRG : Trade Policy Review Group)과 貿易政策委員會(TPC : Trade Policy Committee)를 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EPC의 조언에 따라, 하기 사항을 포함한 國際貿易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政策 유도의 책임을 갖는다.

- 美國의 輸出 擴大
- GATT에 관한 事案
- 法의 허용 정도에 따른 불공정 貿易慣行에 관한 전반적인 美國의 貿易政策
- 東西貿易 문제를 포함한 雙務貿易 및 물자 현안
- 에너지 문제에 관한 國際貿易 전반 사항
- 貿易機關 직접투자 사항
- 國際貿易, 물자, 직접투자에 관한 政策 연구

貿易의 對外貿易 협상부서로서 USTR은 다음 분야의 國際協商에서 美國을 대표한다.

- GATT 활동
- GATT의 제반 활동이 주로 貿易과 물자에 관련될 경우 OECD에서의 협의, 회의, 협상
- UN 貿易開發會議(UNCTAD)와 기타 多者間 회의에서의 貿易 및 物資 문제
- 東西貿易 및 물자회의를 포함한 기타의 双務 및 多者間 協商
- 1930年 關稅法 704條와 734條 관련 협상
- 直接投資 부양과 억제에 관한 協商과 투자장벽에 관한 双務 투자 현안
- 1974年 貿易法下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구제 조항 보상에 관한 협상과 301條에 의한 불공정 관행에 관한 협상

USTR 代表는 海外 私的投資機關 (OPIC :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副會長이며, 國際通貨 및 金融政策에 관한 國家 자문위원회의 회원이다.

USTR의 보고서는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를 통하여 大統領과 의회에 송부된다.

다. 組 職

3名의 副代表가 USTR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들도 역시 대사급이며 두사람은 워싱턴, 한사람은 스위스 제네바에 주재한다. 제네바에 소재한 부대표는 GATT의 美國 대표이며 UNCTAD의 經濟貿易에 관한 협상 책임자이다.

워싱턴의 1名의 副代表는 貿易政策 조정과 함께 GATT와 UNCTAD 外의 双務 多者間 協商의 책임을 지며 USTR 내의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 地域間 貿易政策 調整

- 캐나다 - 멕시코, 일본 - 중국,
라틴 아메리카 - 카리브 해안국가 -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 多者間 貿易 協商

- GATT 事案

또다른 副代表는 지역 간 대외관계 업무와 이의 운영을 관장하며 USTR 내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 사업과 서비스

- 농산물, 물자

-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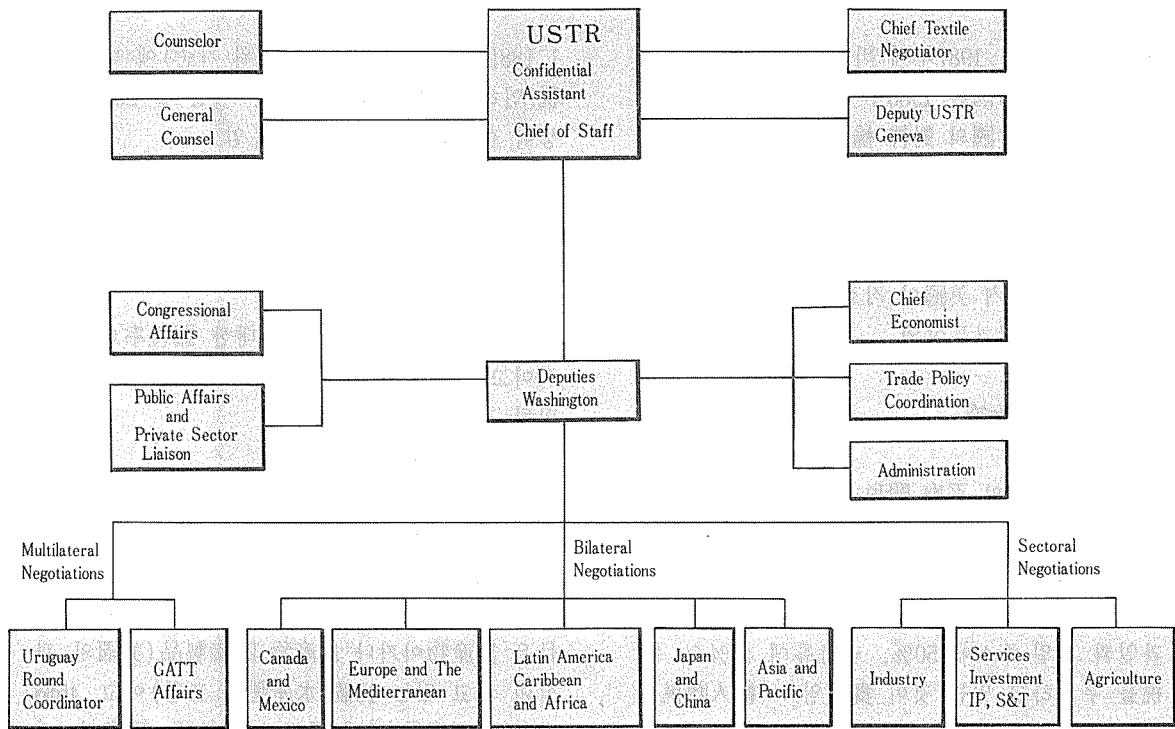
- 공공사업과 사기업 부문의 연락

- 官吏

- 컴퓨터 운영

역시 대사급인 수석 섬유 협상 담당자는 섬유 협정의 협상 책임을 가지며 섬유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관련된 모든 事案의 대외 협상시 美國을 대표한다.

USTR 代表는 國際貿易法과 소관 분야에 조언을 하는 수석 자문관의 지원과 함께 貿易政策에 관한 조언과 OECD 무역위원회에서 美國을 대표하는 자문관의 보좌를 받는다.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칼라힐스 USTR 대표는 '89. 4. 28 주요 외국貿易障壁에 관한 第4次 年例 報告書를 발표했는데, 그는 “이 報告書는 외국 무역 장벽의 완화 및 철폐와 世界市場을 개방시키기 위한 協商에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무역 장벽에 관한 1989 國家貿易報告書(NTE)는 美國의 主要 交易 상대국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무역 장벽을 조사한 것이다. 이 報告書는 國際貿易 規定과 관련있는 무역 장벽을 열거, 무역 장벽이 미칠 수 있는 經濟的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고 무역 장벽의 철폐를 위해 취해지고 있는 行政府의 조치를 서술하고 있다.

NTE 報告書는 1988 貿易法의 “수퍼 301條”와 “특별 301條”에 따라 우선 貿易慣行과 優先 協商 對象國 지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USTR가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의 하나이다.

“本 NTE 報告書는 美國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는 외국의 무역 장벽 철폐와 國際貿易制度를 강화키 위한 行政府의 노력에 유익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칼라힐스는 말했다.

本 NTE 報告書는 USTR과 關係部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1984年 貿易 및 關稅法 시행 이래로 매년 작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88 綜合貿易 및 競爭法은 貿易障壁이 철폐될 경우 美國의 輸出이 증가될 수 있는 “優先 貿易慣行”을 규명하고 무수하고도 광범위한 貿易障壁을 고수하고 있는 國家들을 對象으로 “優先 協商對象國”을 지정하기 위해 本 報告書와 기타의 자료를 USTR이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89년 6月 20日까지 USTR은 優先 協商對象國의 모든 優先 貿易慣行에 대하여 301條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후 12~18개월에 걸친 협상을 통해 優先 貿易慣行의 철폐를 추진해야 한다.

2. 貿易障壁 報告書 中 韓國 關聯 主要內容

1988年 美國의 對韓 貿易赤字는 1987年과 변동없이 99억 달러이며 美國 商品의 對韓 輸出은

113억 달러로서 1987年에 비해 32억 달러(39.5%)가 증가. 韓國은 1988年 美國의 7大 輸出市場이었음. 美國의 對韓 輸入은 1988年에 212억 달러로 1987년보다 17.8%가 증가.

1987年 韓國內 美國의 직접 투자 주식은 1986年보다 3억 3,900만 달러가 증가한 10억 2,000만 달러. 韓國內 美國의 직접 투자는 대체로 은행, 금융 및 전자분야임.

가. 輸入政策

(1) 關稅

1987年 韓國의 平均 關稅率은 12.7%로서 비교적 높은 편임. 關稅引下는 모든 工產品과 소수의 農產品에만 적용, 시행되고 있음.

농산품의 關稅는 매우 높은 편임. 대부분의 과일과 과일 쥬스에 50%, 건과류에 40%의 關稅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實例임. 輸入關稅는 또한 美國 輸出業體의 관심이 되고 있는 소다회, 자동차부품, 전기통신장비, 종이제품을 포함하여 수많은 工產品에 계속하여 무역 장벽이 되고 있음.

美國產 工產品과 農產品에 부과한 高關稅로 입은 貿易 피해의 추정은 어려운 상황임.

아몬드는 40%의 높은 輸入關稅가 부과되고 있으나 기타의 주요 輸入障壁은 없음. 아몬드에 부과한 關稅를 완전히 철폐하면 美國은 매년 300만 달러~500만 달러의 輸出을 증가시킬 수 있음. 電氣通信裝備에 부과되고 있는 현행 13%의 關稅가 철폐될 경우 매년 5,000만 달러의 輸出 증가가 가능함.

韓國과의 貿易協商에서 美國은 특히 관심이 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상당한 關稅 인하 조치를 촉구하였음. 韓國은 1984年에 5개년 關稅引下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평균 關稅率이 1983年 23.7%에서 1988年 18.1%로 인하되었음. 韓國은 최근 제2차 5개년('89~'93) 關稅 인하 계획의 첫번째 과정을 시행하였음. 이 계획에 따르면 계획이 완료되는 1993년에 평균 關稅率이 7.9%로 인하될 것임. 農產品의 평균 關稅率은 1993년에 16.6%가 될 것임.

뿐만 아니라, 1989年 3月 14日부터 韓國은

1,188個 품목(HS분류 10단위 기준)에 대한 關稅 인하 조치를 단행하였음. 이들 중 200개 이상이 美國의 輸出 관심 품목임.

전반적인 關稅 인하 계획은 점차 美國의 輸出優先 關心事案을 개선할 것이나 農산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구제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美國의 최대 관심품목에 대한 關稅率의 대폭 적이고 가속적인 인하문제가 쟁무 협상에서 논의될 것임.

(2) 輸入物量 規制

韓國으로 들어오는 모든 輸入品은 통상적이고 자동적인 輸入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547個 품목(HS 10단위 분류)은 외국 貿易法(FTA) 하에서 “禁止”되어 있음. 이중 501個品目은 農產物이거나 農產物 關聯製品(美國의 관심이 되고 있는 18個 水產製品 포함)이고 46個 품목은 工產品(몇개 품목만이 美國 輸出의 관심이 되고 있음)임.

輸入制限 품목은 쿼터의 적용을 받거나 輸入이 금지되고 있음. 農產品에 대한 韓國의 輸入規制는 과일, 채소, 과일쥬스 및 쇠고기를 포함하고 있음.

이외에도 韓國의 “特別法”은 關聯 부처가 특정 품목에 대하여 쿼터 혹은 輸入禁止를 가겨울 수 있는 “推薦”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 法의 적용 범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음. 사료용 곡물, 대두, 땅콩과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한 農產物 분야의 輸入은 特別法下에서 쿼터를 통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땅콩에 대해서는 쿼터가 배정되어 있지 않음. 韓國은 GATT에 이 輸入 규제 품목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GATT條項에 따라 이를 정당화 하지도 않았음.

美國의 農產品과 木製品의 對韓 輸出은 1988年에 총 26억 달러에 이르러 韓國이 日本에 이어 美國의 두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음. 그러나 이 중 거의 모든 製品(90%)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輸出되었음. 부가가치가 높은 農產品에 대한 美國의 輸出은 규제받고 있음.

韓國과의 貿易協商에서 美國은 모든 輸入 물량 규제의 철폐를 반복해서 촉구하였음.

1988年 韓國은 아보 카드 및 냉동 감자와 같은 몇몇 農產品을 포함하여 333個 품목을 輸入 자 유화하였음.

1988年 韓國은 오렌지 쥬스 원액의 쿼터를 늘려 美國의 매출은 13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오렌지 쥬스의 輸入 쿼터는 美國輸出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韓國이 美國에 오렌지를 輸出하고 있어도 美國의 對韓 오렌지 輸出은 불가능함. 輸入 사료용 곡물의 경우, 韓國의 양축농가들이 더 많은 輸入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輸入 쿼터에 묶여 있음.

韓國의 輸入物量 규제로 인한 貿易 피해는 추정하기 곤란. 많은 경우 輸入 규제 품목의 자유화는 輸入 증가를 촉진키 위해서. 상당한 關稅引下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高關稅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農產品인 레몬과 포도는 輸入 물량 규제 철폐후 輸出이 상당히 증가하였음. 레몬 輸出은 1984년 輸入規制 철폐 이후 평균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포도의 輸出은 1985년 輸入 규제 철폐 이후 매년 평균 220% 증가하였음.

輸出 잠재력이 큰 대표적인 품목은 상등육 쇠고기임. 3년 이상 輸入 금지조치 이후, 韓國은 1988년 7月 쿼터하에 輸入을 재개하였음. 1988년 후반기 쿼터량은 1만 4,500톤이었으며 1989년에는 3만 9,000톤으로 증가하였음. 高關稅와 輸入 절차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쇠고기 輸出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났음. 1988년 후반에는 2,300만 달러를 초과하였음. 輸入 쿼터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美國의 매출액 증가는 더욱 커질 것임.

1988年 3月 美國은 韓國의 쇠고기 輸入規制에 대한 301條 청원을 받아들였으며, 本 事案에 관한 GATT의 분쟁 해결 심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는 1989年 上半期 中에 판명될 것으로 보임.

1989年 1月 韓國과 美國은 포도주에 관한 301條 調查를 해결하기 위한 각서를 교환하였음. 韓國은 1989년에 실체적으로 포도주와 포도주 관계 제품 쿼터량을 확대하였으며 1990년의 쿼터 철폐에 동의하였음. 스파클링 와인과 브랜디 輸入規制는 1991년 철폐될 것임. 이 협정은 또한

와인과 와인제품에 대해 關稅引下, 와인 쿨러에 대한 酒稅 인하와 외국의 와인과 와인 제품 輸入과 유통시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였음.

1989年 7月 1日부터 韓國은 보드카, 럼, 진과 같은 알콜 음료의 輸入을 개방시킬 것이나 위스키에 대해서는 1991년까지 쿼터제가 적용됨. 美國은 버본 위스키의 對韓 진출을 시도하여 왔음.

1989年 1月 韓國은 “輸入 감시 품목 리스트”를 철폐하였음. 輸入 감시 품목 리스트는 실제로 輸入 자유화 품목이 증가하였을 경우 輸入 규제의 목적으로 최근에 자유화된 품목의 輸入을 감시키 위해 사용되었다. 本 리스트의 품목중에 韓國은 輸入 자동 승인 리스트에 22個, 규제 품목 리스트의 農產物 품목에 12個를 포함시켰음.

韓國은 GATT의 18條 규정인 BOP(國際收支) 條項下에 輸入 물량 규제를 정당화하였는데 美國과 여러나라는 1987年 11月 GATT BOP 委員會 회의에서 1986年 이후 韓國의 國際收支의 複자로의 전환을 지적하며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였음.

1988年 중반에 美國은 美國의 輸出業體들의 특별 관심 대상이 되었던 약 100個의 農產物 규제 품목을 韓國側에 제시하였음. 美國은 双務協商을 통해 “우선품목”에 대한 輸入 물량의 규제 철폐를 요청하였음.

1989年 4月 韓國은 몇개 품목을 美國의 우선 관심 품목에 포함하여 3個年 農產物 輸入 자유화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輸入 자유화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인데 美國은 輸入 물량 규제에 해당된 품목에 대한 輸入 자유화를 계속 추구할 것임.

韓國의 특정산업에 대한 2個의 “特別法”(약사법과 기술진흥법)은 관련부처가 國產品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輸入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國產化 政策下에서 일단 國內製品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國內 업계는 政府에 대하여 경쟁 제품의 輸入禁止를 청원할 수 있음. 韩國은 GATT의 절차에 따라 이러한 조치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았다.

이같은 자의적이고 애매한 절차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美國 輸出品 中에 에스파테임과 약간의 의약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

1989年 3月 韓國은 美國側에 1990年 7月까지 시행중인 “국경閉鎖” 條項과 關聯된 품목을 8個로 줄일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나 이 8個 품목은 美國의 輸出 관심 대상 품목이 아니다. 韓國은 또한 시장 폐쇄 조항이 앞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法과 규정에서 삭제될 것이라고 시사하였음.

(3) 稅關慣行

최근 韓國의 통관절차는 개선되었으나 美國 업체는 韓國 稅關 관리들이 輸入品目의 분류와 關稅賦課時 상당한 자유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를 계속해 보고하여 오고 있음. 이 문제는 예비품 및 교체부품에 대한 關稅 부과시 특히 심각함.

韓國의 稅關 관리들은 예비품 혹은 교체부품 輸入에 50%의 關稅를 부과하고 있음. 이 關稅率은 실제로 부품의 HS 分類數나 혹은 예비품 또는 교체부품에 대한 “統一세율”에 해당하는 稅率보다 높음. 이같은 무역장벽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금액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美國 업체는 예비품 혹은 교체부품의 공급은 종종 稅關의 관여로 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빈번히 불평하고 있음. 이는 가끔 美國의 아프터 서비스에 대해 비판의 원인이 될 수 있음.

美國은 韓國이 통관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였음. 韩國은 최근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예비품 및 교체부품의 輸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통관개선위원회(CCDC)를 설립하였음.

나. 標準制度, 試驗検査, 表示, 인증

특정 부문에 대한 韩國의 標準制度, 試驗検査, 인증 절차상의 규정들이 美國의 輸出에 대해 규제적 장벽을 계속하여 구축하고 있는 여러가지 특정부문의 法에 남아 있음. 규제적 승인 절차는 美國의 對韓 輸出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로서 화장품, 식품, 의약기구, 수의학기구, 의약제품, 전기제품과 전기통신 제품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계획된 전국 컴퓨터 네트워크에 적용될 수 있음.

또한 여러 파일 제품에 대해 부당한 규제적 식물 위생 요구는 國際的 관행에 따른 품질 혹은 안전 보증의 제공보다는 경쟁 제품의 國內 제조업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高率의 關稅 혹은 여타의 무역장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貿易 관행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實例로 韩國은 체리를 불필요하게 고온 상태에서 훈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제품 외관에 나쁜 영향을 주며 보존기간을 단축시킴. 체리는 45%의 關稅가 부과되고 있음.

美國側은 農業과 電氣通信 문제에 대한 일반 貿易協商과 기술적인 협의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관성 있게 제기하여 왔음. 韩國은 輸入에 역효과를 주는 조항을 규명키 위해 특별법을 재심하기 시작.

美國은 韩國이 1989年 3月에 발표한 이같은 재심의 예비 결과를 현재 검토하고 있음. 美國은 標準制度와 기술적인 규정을 개발하고 적용키 위하여 명확한 절차를 시행하고 이를 은폐된 무역장벽으로서 이용하지 韩國에 계속 말도록 촉구할 것임. 韩國은 特別法의 재심을 계속할 것이라고 시사하였음.

다. 政府 購買

韓國은 GATT의 政府購買協約(GPC)의 조인국이 아님. 韩國 政府의 구매기관인 조달청(OSROK)은 명시된 國產化 규정의 철폐를 위하여 구매 규정을 수정하였음. 그러나 美國 업체들은 상쇄 구매방법을 포함한 입찰방식이 권고되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음.

韓國은 또한 기술 이전을 강조하고 있는 주요 軍事裝備 구매에 대해 50%의 융셋 거래를 채택하고 있음. 韩國은 경쟁적 구매 절차에 관한 공개적이고 非차별적인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음.

韓國電氣通信公社(KTA), 韩國 데이터通信(DCCK), 韩國電力公社(KEKPC)와 같은 준정부 투자기관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보고되고 있음. 이 반독자적인 기관들은 그들의 관리하의 사

업 참가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로컬 컨텐트 혹은 여타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韓國의 購買政策은 종종 수익사업에 대한 美國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어떤 경우, 美國 업체들은 韓國의 對美 貿易黑字 축소의 일환으로 주요 프로젝트를 공여받음으로써 이익을 보았음.

美國은 先進國 차원에서 조만간 韓國이 GATT政府 구매 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할 것임. 韓國은 앞으로 몇년내에 本 협약에 가입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음. 美國은 또한 韓國의 政府 투자기관에 의한 보다 명백한 구매절차를 도입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음.

라. 知的 所有權 保護 障壁

韓國은 1987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著作權 보호를 포함한 特許 및 著作權 保護法을 강화 시행하였음. 商標 許可 규정은 1986年 완화되었으며 外國人의 등록이 용이하도록 개정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法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단지 최근에 들어서 개선되기 시작하였음.

美國 업계는 著作權法의 시행 미흡으로 입은 무역피해가 매년 1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

오디오, 카세트, 교과서, 비디오 게임 및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가 성행하고 있음. 韓國은 또한 스포츠용품 위조상품의 근원지임. 知的所有權 보호 미비로 전체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추가적인 피해효과의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함. 美國의 의약품 제조 업체들은 韓國의 特許 절차가 外國 特許權者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같은 主張에 대해 美國은 1988年 후반 305條에 의한 사실 규명조사를 개시, 현재 조사 진행중임.

韓國은 최근 새로운 著作權法과 규정의 시행 강화 목적으로 부처간 상설 전담반을 설치하였음. 이 전담반은 商工部 제 1차관보가 위원장이며 4個 分科委員會로 구성되어 있음. 1個 分科委員會에 속한 대검찰청은 전국적으로 120名의 조사관, 340名의 경찰관, 440名의 關聯 전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49個 檢찰청에 특별 시행팀을 지명하여 단속, 압수 및 엄중한 처벌을 행하고 직접적 불평에 회신도 해주고 있음. 다른 分科委員會는 해적판 제품의 輸出 금지, 해적판 문제의 일반대중의 인식 제고와 韓國의 知的所有權 보호 강화에 역점을 둘 것임.

韓國은 知的所有權法 시행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美國側에 확약하였음. 知的所有權 피해자는 商工部 전담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美國側은 전담반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할 것임.

마. 서비스 障壁

韓國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특정 서비스 분야에 규제 조치를 고수하고 있음. 특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外國人 투자는 지분 참여 또는 기타 규제를 통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받고 있음. 이 수많은 규제조치는 1956年 체결된 韓·美 通商 우호항해조약(FCN)의 韓國의 의무 조항에 위배되는 것임.

美國의 투자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주요 관심분야는 전문 서비스(가령, 회계, 법률 및 금융분야 서비스), 광고, 해운, 운송 및 電氣通信 서비스 등임.

규제 조치가 貿易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기 곤란함. 개별 서비스 활동으로 얻은 이익에 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는 美國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실제로 뒷받침해 줄 것임. 美國 업계는 독자적 판단으로 제품을 선적, 이동, 분배, 광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사와의 직접 연락망은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매우 긴요함.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서비스 분야에서는 귀찮고 자의적인 규정들 때문에 안정된 國內 경쟁자들에 이미 부여된 서비스 분야 활동 범위가 종종 제한받고 있음.

韓國은 “네거티브 리스트” 분야를 철폐함으로써 서비스 시장을 점차 개방하고 있음. 1987年 韓國은 301條 조사의 결과로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시장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한 바 있음. 해운 업체의 지점 개설과 1989년에 美國은

행이 추가로 5個의 지점 개설을 신청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韓國은 최근 1990年에 광고 분야에서 과반수 이상의 외국인 소유 합작투자를 허용하고 1991年에 외국인 지분 완전 소유의 자회사 설립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광고 합작투자시 외국인의 지분 일부 소유는 현재 허용되고 있음. 韓國은 최근 외국 업체들의 자유로운 제품 유통이 가능하도록 貿易 허가 취득 과정을 자유화하였음. 韓國은 또한 1990年 데이타 베이스 및 데이터 프로세싱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시사.

美國은 韓國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최우선 관심사항이라고 강조. 1989年 2月 美國은 綜合貿易法의 電氣通信 조항하에서 韓國을 優先協商對象國으로 지정하였음. 双務協商에서 美國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電氣通信의 하부구조의 진출과 이용을 포함한 電氣通信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이다.

바. 投資 障壁

韓國은 점차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시장 개방을 하고 있음. 1988年 4月 韓國의 標準工業 分類制度의 78.9%가 외국인 지분 투자에 허용되었음. 약 97%의 공업분야와 61%의 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음.

韓國 政府는 과거보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케이스별 투자 승인 절차를 임의로 이용, 개별 투자 계획을 자체시키거나 혹은 貿易 여건을 왜곡시키고 있음. 300만 달러 이상 또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외국인 투자는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財務部는 특정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부처에 이 신청을 이관시키고 있음. 승인절차는 가끔 韓國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련 부처와의 일련의 협상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음.

투자 승인과정에서, 貿易關聯 투자방안이 韓

國의 산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공식적 승인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음. 이러한 방안은 로칼 콘텐트의 증대화와 외국 기술 도입의 확대, 합작투자에서 한국 측의 지배가 확실하도록 외국의 지분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들임. 現行法下에 허용되는 경우라도, 100% 외국인 지분 소유는 관련부서가 통상 첨단기술 목적을 위하여 본 투자를 특별히 희망할 때만 승인이 가능함. 韓國의 제 규정은 여러 부문에서 투자를 제한하고 특정산업 투자에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해 놓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 美國 업계는 韓國이 의약품과 음반 생산 참여에 로컬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8年 4月 韓國은 국내기업에만 적용해온 “주식공개” 정책을 외국인 투자업체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한 바 있음. 韓國 증권거래소가 선정한 韓·美 합작투자 법인은 적어도 주식의 30%를 일반에 공개 매각하여야 함.

1988年 9月 1日 韓·美兩國은 韓國에서의 기존 투자업체와 '88년 말까지 투자 신청을 제출한 투자업체에 대해서 주식 공개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환하였음. 1989年 1月 1日 이후 접수된 美國 투자 신청은 韩國 업체와 같은 “企業公開” 원칙을 적용하며 적어도 3年間 업체 설립에 영향을 줄 것임. 이는 美國 투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國내 지분 의무화를 강요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美國은 각서 교환이 다만 일시적 해결에 불과하다고 간주, 韩國이 “株式公開” 정책을 폐지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임. 株式公開 관행이 貿易 왜곡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기는 어려움.

韓國의 투자 제한과 승인절차 관행은 韩·美 통상 우호조약에 위배되는 것임. 美國은 종종 韩國이 美國 투자에 미치는 모든 차별적 관행의 철폐와 무차별적이고 명료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며 또한 우루파이 라운드를 통해 貿易關聯 투자의 자유화를 추구할 것임.